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 안 경 위

- 가. 발 의 자: 서상열 의원
나. 의안번호: 제2011호
다. 발의일자: 2024.8.12.
라. 회부일자: 2024.8.14.

2. 제 안 사 유

- 최근 인천 공동주택 주차장에서의 전기자동차 화재로 인하여 전기자동차 배터리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극심한 상황임.
- 이에 서울특별시에서 공용차량 또는 업무용 차량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할 때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하는 자동차를 우선 구매하고, 서울특별시장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를 지원할 때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하는 자동차를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전기자동차의 안전한 운행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3. 주 요 내 용

- 가. 시장,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공용차량 또는 업무용 차량을 구매할

때 환경친화적 자동차 제조사가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우선 구매하도록 함(안 제4조제2항).

나. 시장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때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한 자동차에 대해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1항).

4. 참 고 사 항

가. 관계법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5. 검토 의견

가. 개요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전기차 관련 화재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시장이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하는 자동차를 우선하여 구매 또는 지원할 것을 명시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 안 제4조제2항은 공용차량 구매 시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것이고, 안 제5조제1항은 민간 지원 시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우선 지원하도록 하는 것으로, 최근의 전기차 화재 사고로 소비자의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알권리가 주목받고 있는바, 개정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바임.
- 다만, 8월 16일 기준 국내에서 전기차를 제조 판매하는 사실상 모든 완성차 업체가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¹⁾했고,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바(8월 16일), 조례 개정의 실효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할 것임.

특히, 민간 부문의 전기차 구매지원 보조금의 경우, 차종별로 50% 이상의 국고보조금이 포함되어 있어 환경부의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이하 ‘지침’)을 준용해야 하는바, 본 조례안과 상충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됨.

1) 국토교통부 자동차 리콜센터 누리집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현황’(국토교통부, 24.08.16)

<전기차 보조금 지원 단가>

(단위: 만원)

구분	2023년			2024년		
	합계	국	시	합계	국	시
승용	860	680	180	800	650	150
택시	1,060	880	180	1,080	900	180
버스(대형)	10,000	7,000	3,000	10,000	7,000	3,000
버스(중형)	7,000	5,000	2,000	7,000	5,000	2,000
화물(소형)	1,600	1,200	400	1,500	1,100	400
이륜(소형)	230	115	115	230	115	115

※ 승용: 5.5천만원 미만(전액), 5.5천만원 이상~8.5천만원 미만(50%), 8.5천만원 이상(미지원)^{2024년 기준}

※ 차량가격 할인에 비례해 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추가지원 하는 경우 중대형 최대 750만원, 소형 최대 650만원 지원 가능